Version 1.0


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10 Eco Lab



Document #: SK바이오사이언스-기본규정

Version #: 2.0

Issue Date: 2020/10/29

제ㆍ개정 이력서

2020년 10월 29일	제 정	Version 1.0



Document #: SK바이오사이언스-기본규정

Version #: 1.0

Issue Date: 2020/10/29

목 차

제1장 종직	4
제1조 (목적)	4
제2조 (적용 범위)	4
제3조 (권한)	
제2장 구성	5
제4조 (구성)	5
제5조 (위원장)	5
제3장 회의	6
제6조 (소집권자)	6
제7조 (소집절차)	6
제8조 (결의방법)	6
제9조 (부의사항)	7
제10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	7
제11조 (통지의무)	
제12조 (의사록)	8
제4장 보칙	8
제13조 (사무국)	8
제14조 (규정의 개폐)	8
부칙	



Document #: SK바이오사이언스-기본규정

Version #: 1.0

Issue Date: 2020/10/29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 한다.)의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.

제2조 (적용 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 (권한)

- ①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.
- ② 위원회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회는 사외이사 예비후보가 관련 법규 및 회사 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.
- ④ 위원회는 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였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해당 사외이사 재임기간 동안의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.



Document #: SK바이오사이언스-기본규정

Version #: 1.0

Issue Date: 2020/10/29

⑤ 위원회는 사외이사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363조의2 제1항, 제542조의6 제1항,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.

제2장 구성

제4조 (구성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어야 한다.
- ③ 위원회의 임기는 동 위원이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 까지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 (위원장)

- ① 위원회는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중에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

Document #: SK바이오사이언스-기본규정

Version #: 1.0

Issue Date: 2020/10/29

제3장 회의

제6조 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제5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7조 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5일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- ③ 위원회는 회의의 연기나 속행의 결의를 할 수 있으며, 이러한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8조 (결의방법)

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





Document #: SK바이오사이언스-기본규정

Version #: 1.0

Issue Date: 2020/10/29

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- ② 위원회의 의결권은 위원장과 위원만 가진다. 단, 위원회 위원이 아닌 각 이사는 의결권은 없으나,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- ③ 위원은 본인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의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의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9조 (부의사항)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1. 사외이사후보의 추천
- 2.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10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임·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11조 (통지의무)

①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3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

Document #: SK바이오사이언스-기본규정 V

Version #: 1.0

Issue Date: 2020/10/29

-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이사 및 위원회에 출석한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여 위원회가 재의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. 단, 제1항의 통제를 받은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 결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- ③ 위원회 부의사항 중 위원회가 회사의 중요 사항으로서 이사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를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.

제12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4장 보칙

제13조 (사무국)

이사회 담당 사무국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제14조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Title



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

Document #: SK바이오사이언스-기본규정

Version #: 1.0

Issue Date: 2020/10/29

부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0년 10월 29 일부터 시행한다.